

環 境 保 全 法

法律 第3078號 1977.12.31 制定
法律 第3213號 1979.12.28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大氣污染·水質污染·土壤污染·騒音·振動 또는 惡臭 등으로 인한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이라 함은 自然의 狀態인 自然環境과 사람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관계가 있는 財產의 保護 및 動植物의 生育에 必要한 生活環境을 말한다.
2. “污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污染·水質污染 또는 土壤污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煤煙”이라 함은 燃料 또는 기타 物質의 燃燒時에 發生하는 煙霧·粒子狀物質 또는 黃酸化物 등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物質의 破碎·選別 기타 機械의 처리 또는 堆積에 따라 發生하거나 飛散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5.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合成 또는 分解時에 發生되는 氣體性 物質을 말한다.
6. “惡臭發生物”이라 함은 사람의 日常生活에 不快感을 주는 黃化水素·石炭酸 또는 그 化合物 기타 刺戟性 있는 氣體性物質을 말한다.
7.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廢棄物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8. “騒音”이라 함은 機械·器具 등에서 發生하는 強한 音을 말한다.
9.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의 사용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強한 震動을 말한다.
10. “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 水質, 土壤을 汚染하거나 騒音·振動·惡臭 등으로 國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害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汚染物質 등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特定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財產이나 農水產物 등의 生育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物質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排除) 이 法의 規定은 原子力法에서 정하는 放射性物質에 의한 環境污染 및 그 防止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4條(環境基準)**
- ① 環境廳長은 快適한 環境을 保全하고 環境污染으로부터 사람의 健康을 保護함에 필요한 環境基準을 設定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設定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地

城環境의 特殊性을 勘察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第1項의 基準에 不拘하고 別途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第5條(環境影響評價 및 協議) 都市의 開發, 產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造成, 에너지 開發, 工業港 또는 道路의 建設, 水資源開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環境保全에 影響을 미치는 事業에 관한 計劃을樹立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計劃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環境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6條(常時測定) ① 環境廳長은 全國의 環境污染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污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은 당해 管轄區域內의 環境污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污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第7條(特別對策地城) ① 環境廳長은 人口 및 產業의 集中으로 環境污染이 顯著하거나 顯著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環境污染防治을 위한 特別對策地城으로指定하고 管轄 市·道知事에 대하여 당해 地域내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樹立하여 施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은 第1項의 指示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地域내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樹立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特別對策地城內의 土地利用 등의 制限) 環境廳長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城內의 環境改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內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內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第9條(自然環境의 保全) ① 環境廳長은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生物의 生育環境 등을 調查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특별히 保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을 自然環境 保全地區로 指定할 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指定의 對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環境保全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 등을 審議하기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環境保全諮詢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필요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 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각각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詢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環境研究機關의 設置) 政府는 環境保全에 필요한 試驗·調查研究·技術開發·資料分析 및 要員의 訓練 등을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研究機關을 設置한다.

第13條(大氣 및 水質의 影響圈別 管理) 環境廳長은 環境污染에 관한 狀況을 把握하고 그 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行政管轄區域에 블구하고 大氣污染의 影響圈地域 또는 水質污染의

水系別水域을 관리할 수 있다.

第2章 排出施設

第14條(排出許容基準) ① 排出施設에서 발생하는 汚染物質과 惡臭發生物 및 機械·器具 등에서 발생되는 驚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廳長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別對策地域에 대하여 環境污染防止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 環境廳長은 第2項의 排出許容基準에 불구하고 第4條 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雜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特別對策地域내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第15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使用開始의 申告)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排出施設을 設置完了하였을 때에는 設置完了한 날로부터 15일내에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申告하고 指定한 期日내에 檢查를 받아야 한다.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適合判定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改善命令 등) 環境廳長은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合判定을 받아 操業 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 또는 驚音·振

動의 정도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者에게 排出施設 또는 汚染物質排出 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의 改善·代替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操業停止 등) ① 環境廳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를 받은 者가 改善命令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期間內에 改善하였으나 檢查結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大氣污染·水質污染·驚音·振動 등으로 인한 國民保健上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急迫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制限·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즉시 命할 수 있다.

第19條(施設의 移轉命令 등) ① 環境廳長은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 改善命令를 하여도 당해 事業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履行할 수 없다고 判斷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그 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轉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稅 또는 免稅할 수 있다.

第20條(許可의 取消) 環境廳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第21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環境廳長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操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第22條(自家測定)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사용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廳長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記錄을 備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自家測定 및 指定 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3條(排出施設管理人)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그 排出施設의 種類와 機能에 따라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排出施設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 및 資格基準·管理內容·遵守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보고 및 檢查 등) ①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出入하여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5條(環境監視員) ①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와 기타 環境에 관한 監視業務을 하기 위하여 環境廳 또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環境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監視員의 任免·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大氣保全

第26條(大氣污染의 規制) ① 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중 事業場이 密着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각 事業場으로부터 大氣 중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 및 財產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基準·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정한다.

第27條(燃料使用에 관한 措置) 環境廳長이 大氣污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場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燃料의 사용을 制限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第27條의 2(燃料用油類의 硫黃含有基準)

① 環境廳長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燃料用油類의 種類별로 硫黃의 含有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油類의 硫黃含有量이 第1項의 基準을 초과한 때에는 그 油類의 製造業者·販賣業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그 油類의 生產·販賣 및 使用을 制限하거나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28條(自動車 및 重機排出ガス의 許容基準) ① 環境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動車 및 重機(이하

“自動車”라 한다)로부터 大氣 중에 排出되는 가스·煤煙 등의 排出許容基準을 自動車種類別로 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容基準의範圍內에서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에 관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은 交通部長官 또는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정한다.

第29條(自動車의 사용 또는 通行統制)

① 環境廳長은 自動車로부터 排出되는 가스, 煤煙 등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使用者에 대하여 煤煙·가스 등의 散發防止裝置의 整備·代替 또는 自動車使用의 정지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은 自動車로부터 排出되는 가스가 사람의 健康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地域에 自動車通行을 統制할 수 있다.

第30條(自動車製作에 있어서의 排出濃度) 自動車를 製作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排出가스 濃度基準에 적합하도록 製作하여야 한다.

輸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1條(自動車燃料添加劑의 規制) 環境廳長은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의 添加劑로 인하여 人體에 顯著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添加劑의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第32條(惡臭發生物의 燐却금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地域에서는 누구든지 적합한 燐却施設이 없이는 고무·皮革·合成樹脂 또는 煙油 등 惡臭가

발생하는 物質을 燐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章 騒音·振動 등 規制

第33條(規制地域의 指定) ① 市·道知事은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騒音(振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防止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騒音規制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4條(騒音規制基準) ① 市·道知事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하는 때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域에 대한 騒音規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基準을 設定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할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4條의 2(自動車騒音의 統制) 市·道知事은 騒音規制地域에서 自動車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規制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그 使用者에 대하여 自動車의 消音器 및 騒音防止裝置의 整備·代替 또는 그 自動車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地域 내에서 特定工事を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은 特定工事로 인한 騒音이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規制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作業時間의 調整·防止施設의 設置 등을 命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種類·申告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水質 및 土壤의 保全

- 第36條(水質污染의 規制)** ① 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中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各 事業場으로부터 公共水域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基準·項目·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정한다.

- 第37條(投棄 또는 毀損 등 行爲의 禁止)**
 ① 누구든지 정당한 事由 없이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定有害物質 또는 產業廢棄物을 버리는 行爲
 2. 動物의 死體·糞尿·塵芥 또는 汚泥 등을 버리는 行爲
 3. 自然環境毀損 또는 自然環境保存을 위한 施設物을 破損하는 行爲
 ② 環境廳長은 特定有害物質, 產業廢棄物, 動物의 死體, 糞尿 또는 嘉芥 등의 汚染物質로 인하여 河川 또는 公有水面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汚染物質의 占有者에게 그 除去를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汚染物質을 排出한者が 따로 있는 때에는 그 者에게 命하여야 한다.

- 第38條(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 등에 의한 汚染防止)** ① 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主務官廳은 公共水域의 環境污染으로 인한 保健衛生上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 條件을 붙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條件內容·危險防止 方法 등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9條(下水終末處理場 등의 維持·管理)** 下水, 廢水 또는 糞尿終末處理場을 設置·運營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放流水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40條(公共施設 등의 整備指示)**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로 하여금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등의 設置·整備 등을 指示할 수 있다.

- 第41條(農耕地의 汚染防止)** 市·道知事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特定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耕地에 流入하는 用水分의 水質基準을 정하거나 覆土·削土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42條(農水產物의 栽培制限)** ① 市·道知事은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土壤 또는 水域이 特定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栽培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汚染地域에 대한 農水產物 등의 栽培를 制限하거나 그 汚染地域에서 生產된 汚染된 農水產物을 廢棄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產物의 栽培制限 또는 廢棄로 인하여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特定有害物質을 排出한 者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 第42條의 2(農藥의 殘留性 有毒物質 含**

有基準) ① 環境廳長은 水質, 土壤 또는 農作物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農藥의 殘留性 有毒物質의 含有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違反하여 農藥을 製造하는 者에 대하여는 製造의 禁止·變更 또는 그 製品의 廉棄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에 응하여야 한다.

第 6 章 費用負擔

第43條(事業者の費用負擔) ① 事業者は 그 事業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實施하는 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② 施行者가 實施하는 環境污染防治事業의 種類·規模·事業者の 費用負擔·기타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事業者の負擔金額)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の 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의 金額은 各事業者에 대한 事業活動의 種類·規模 및 汚染物質의 排出程度 등을 基準으로 하여 負擔總額을 配分한 金額으로 한다.

第45條(費用負擔計劃) ① 施行者가 環境污染防治事業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保全諮詢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費用負擔計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의 樹立 및 決定·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強制徵收) ① 事業者が 負擔金

을 納付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監督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期限은 쳐어도 10日 이상이어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을 받은 者가 그 期限內에 負擔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 7 章 防止施設業

第47條(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8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破産宣告를 받는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49條(登錄의 取消 등) 環境廳長은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一部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 8 章 產業廢棄物處理

第50條(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 ① 產業廢棄物(이하 “廢棄物”이라 한다)의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處理業者”라 한다)는 廢棄物處理의 對象, 處理方法 등에 관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③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은 處理業者의 許可缺格事由 및 그 許可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1條(廢棄物의 廢棄制限) ① 處理業者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廢棄物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質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業者가 처리 후에生成된 廢棄物 또는 처리되지 아니한 廢棄物을 營業場所 이외의 場所로 運搬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2條(廢棄物의 終末處理) ① 事業者가 廢棄物을 終末處理하는 경우와 處理業者가 廢棄物의 처리로 인하여生成되는 廢棄物을 終末處理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方法과 基準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9章 紛爭調停 및 被害賠償

第53條(紛爭의 調停申請) ① 環境污染으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道知事은 그 申請內容이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내에 申請書를 環境廳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調停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委員會) ① 環境污染으로 인한 紛爭을 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 所屬下에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이하 “中央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15人 이상 20人 이하로 하되 公益을 代表하는 者와 產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중에서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任命 또는 委嘱한다.

③ 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調停委員會의 機能) ① 中央調停委員會는 2 이상의 市·道에 걸친 紛爭과 地方調停委員會에서 스스로 調停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決定하여 移送된 紛爭을 調停한다.

② 地方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紛爭을 調停한다.

第56條(調查委員의 指名)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이 있을 때에는 調停委員 중에서 5人 이내의 調查委員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57條(事實調查 등) ① 관계當事者間의 紛爭의 解決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관계서류를 閲覽 또는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거나 관계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 調査委員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58條(調停委員의 義務) ① 調停委員은 紛爭의 實情을 調査하고 公正하게 調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調停委員은 紛爭調停 중에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9條(調停效力) ① 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내에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에 대하여 當事者가 이를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은 調停調書를 作成하고 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 第206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의 效力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60條(生命 身體의 故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故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は 그 故害를賠償하여야 한다.

② 事業場 등이 2個 이상 있을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서 排出된 汚染物質에 의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故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は 連帶하여 그 故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故害의 賠償에 관하여 이 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民法 이외에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第10章 補 則

第60條의 2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廳長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措置를 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害虫驅除方法의 改善
 2. 保安林의 指定
 3. 禁獵區의 設定
 4. 狩獵의 規制 및 團束
 5. 農藥의 使用規制
 6. 農業用水의 使用規制
 7.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
 8. 燃料의 品質改善 또는 代替
 9. 暖房機器의 改善
 10. 自動車燃料의 代替
 11. 綠地地域·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指定
 12. 下水處理場의 設置
 13. 公共水域의 凌濶
 14. 都市開發制限區域의 指定
 15. 產業施設設置로 毀損된 國土의 原狀復舊
 16. 道路·鐵道設置時 切開地의 整備
 17.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施設中止·變更 또는 그 工作物의 移動이나 除去
 18. 公有水面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정지·限制 또는 施設 등의 改築·除去
 19. 老朽車輛의 엔진의 變更 또는 代替
 20. 洗劑의 代替
 2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 第60條 3 (検査用 機械器具의 型式承認 등)** ① 自動車의 排氣ガス, 驟音 등에 관한 檢査用 및 整備用 機械·器具

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形式에 관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 1 項의 型式承認을 받은 者가 그 機械·器具를 製作 또는 輸入할 때에는 確認検查를 받아야 하며, 確認検查를 받은 機械·器具를 사용하는 者는 精度検查를 받아야 한다.

③ 第 2 項의 確認検查 및 精度検查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정한다.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検查 또는 精度検查를 받지 아니한 機械·器具는 이를 販賣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第61條(環境保全協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研究·技術開發·啓蒙事業 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62條(國庫補助) 政府는 다음 各號의 經費의 全部 또는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을 위한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

2.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 및 環境研究機關의 調査·研究·技術開發 및 啓蒙事業 등에 所要되는 經費

第63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環境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一部를 市·道知事에 委任할 수 있다.

第64條(手數料)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設置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65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章 罰則

第6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여 操業을 하거나 防止施設을 正常 運營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適合判定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8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5. 第21條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6.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動車를 製作하거나 輸入한 者

第67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查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虛偽로 하거나 관현 公務員의 檢查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3.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施工을 한 者

4. 第5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의 處理業을 한 者

第68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2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 第1項·第32條·第37條 第1項·第51條 第1項·第52條 第1項·第58條 第2項 또는 第60條의 3 第

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27 條 · 第27條의 2 第2項 · 第31條 · 第34條의 2 · 第35條 第 2 項 · 第

37條 第 2 項 또는 第42條 第1·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34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驟音 規制基準에 違反한 者

第69條(同前)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 第 1 項 · 第35條 第 1 項 또는 第51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60條의 3 第 4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70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 使用人 · 기타의 從業員이 第66條 내지 第69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罪를 犯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한 行政處分 기타 行爲는 이 法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한 行政處分 또는

行爲로 보고 保健社會部長官에 대하여 한 行爲는 環境廳長에 대하여 한 行爲로 본다.

② 이 法 施行當時 道路運送車輛法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 確認検査 또는 精度検査를 받은 自動車의 排出ガス · 驅音 등에 관한 檢查用 및 整備用의 機械 · 器具는 이 法에 의하여 型式承認 · 確認検査 또는 精度検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이 法 施行에 따른 取消 法律의 整備) ① 農藥管理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 3 條 第 1 項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 다만 有毒性農藥의 公定規格을 設定, 變更하고자 할 때는 環境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國土建設綜合計劃法 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9條 第 3 項 第 2 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 商工部長官, 農水產部長官, 保健社會部長官, 交通部長官 및 環境廳長을 포함한 8人 이내의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企劃調整室長.

③ 下水道法 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 6 條 第 3 項 내지 第 5 項 중 “保健社會部長官”을 “環境廳長”으로 하 고 同條 第 6 項을 刪除한다.